

제 2878호		화순군공보		발 행 일 : 2019년 9월 24일 발 행 인 : 화 순 군 수 발 행 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19-11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19-1244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3							
화순군 공고 제2019-1250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화순군 공고 제2019-125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5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5.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예성길 63-3 외 3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4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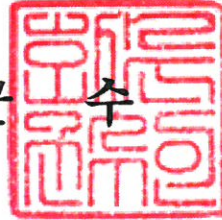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9. 20.

화 순 군 수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19. 9. 20. ~ 2019. 10. 5.(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명	차명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 유	비 고
77오8544	박*인	그랜드 스타렉스	2019. 9. 20.	소유자 신청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청 재난안전과(061-379-3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대상자에게 이전 등록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 명칭: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19. 9. 23. ~ 2019.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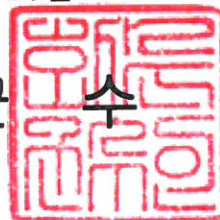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1	60보2307 전남27나6772 전남2가1378	정*원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오도실길 ***-**-****

3.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 문의전화: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1)

2019년 9월 23일

화 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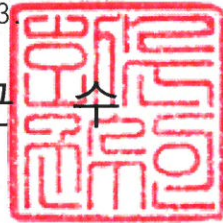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23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19.09.23.~2019.10.18.(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반송이력 공고 적발 통보서 1부.